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0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현행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종료로 사문화된 조문 삭제 및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이 도래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 3년 연장(안 제5조 및 제7조)

- 감면기한 연장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9조제1항)

- 취득하는 부동산 →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다. 고용창출기업 감면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0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조문 삭제(안 제11조)

-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9조 : 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으로 변경

마.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2)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0. 20. ~ 11. 9.)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취득하는”을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 개발· 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
점의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
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
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
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포 농공단지
2. 구지 농공단지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2026년 12월 31일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조례 제27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 2023. 6. 5.]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⑧ (생략)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시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1. 시의 노사화합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2.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및 스타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12. 30 조례 제4000호).(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관리 지원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206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